

2024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복지분과 정책제안서

경상남도 취약계층 청년 발굴단

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과 심리적,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한 정신적 병명 호소와 같은 정신 실태와 그 외의 청년 혜택에 대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향해 동일한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를 형성하려 함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(목적) 도내 청년들의 실태조사를 견해. 그들의 활동력 및 운둔 상황 등을 파악하여,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게, 그리고 그들의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하여 같은 청년으로서 자립심과 자신감을 키워주고, 건강한 지역 청년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둠
- (필요성) 국가 기관에서 찾아낼 수 있는 청년들은 한정적이지만, 주변에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채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. 그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같은 청년들이 발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도움 서포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.
- (현황) 현재, 지역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혜택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나, 그들이 어떻게 받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, 또한 때를 맞추지 못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.

□ 정책 개요

- 사업 내용
 - (추진방향)
 1. 청년 거주 실태조사, 청년들의 취업 실태조사, 고립운둔 실태 조사
 2. 청년 정신상담 실태 조사
 - (추진기간) '24. 9월부터 인원 모집 후 '24. 10월부터 지속

- (추진단계1) 실태조사 인원 모집

- (세부전략1) 청년의 실질적인 거주, 현 상태 파악 조사
- (세부전략2)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청년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
- (세부전략3) 청년 피해대상자는 시범 운영을 목적으로 두고 지역별로 30명 내외로 한다
- (세부전략4) 청년 서포터즈는 각 시도별로 6~9명 내외로 한다
- (세부전략5) 청년 서포터즈 비대상자
 - 1) 성범죄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사실로 인해 실형을 받은 자
 - 2) 폭행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사실로 인해 실형을 받은 자
 - 3) 정신병력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자
 - 4) 실태조사구역 시, 군 이외의 시, 도, 군에 거주하는 자
(실제 거주구역이 그 지역일 경우 해당사항에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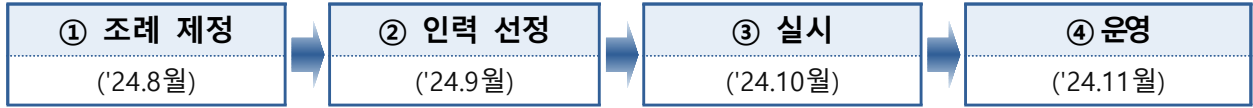
- (추진단계2) 고립청년 맞춤형 서비스 작성

청년 서포터즈들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,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, 청년 서포터즈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발판이 될 수 있게 기관은 지원을 한다.

- (세부전략1) 청년이 살고 있는 거주 등록지로 가서 실거주지가 맞는지 확인 후 현재 도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상태를 확인한다.
- (세부전략2) 지원정책의 대상이 맞으면, 준비해 간 팸플릿 또는 태블릿형 기기를 이용해, 안내를 하고,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.
- (세부전략3) 지원정책의 대상을 지자체와 연결시켜,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커넥팅을 계속 해준다.
- (세부전략4) 지원정책 대상이 지정 기간 이내에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피드백하여 지원대상에게 전달한 후 서포트를 종료한다.
최종 기한은 3개월로 한다.
- (세부전략5) 지원정책 대상이 혜택을 받았을 경우, 상급자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후, 서포트를 종료하도록 한다.

○ 추진일정

- 조례 제정 이후 사업자 선정 및 조례 청년 설명 이후 운영



□ 사업 예산

○ 20,000천원 * 행정복지센터 등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한 인원 선별

- 산출내역

항목	세부내역	소요예산 (단위: 천원)	비고
총 계		20,000	
○ 행정복지센터 내 조사인력 구인 및 관련 업무 설치			
① 청년 소통망 구축	· 청년 서포터즈 소통망 구축	10,000	(서버는 경상남도 도청에서 관리)
② 청년인력 확충	· 행정관련 보조 청년 인력 구인	6,000	(청년 고용 확인 시 각 시, 군에 직접 지원)
③ 시, 군 지원비	· 시, 군 운영 지원비	4,000	(운영 확정시 지원)

□ 기타 참고 사항

○ 관련법규

- 청년기본법(국가)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4조의5(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
-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,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(이하 "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,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국무총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, 그 밖의 전문기관·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